

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9. 6. 24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9. 6. 25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7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(99. 7. 6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과장 권병준)

가. 제안이유

- 경제사정의 악화와 더불어 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야기되는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음.
- 1999. 3. 31일자로 공포된 개정법률에 의하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이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 시행자와 부동산소유권 이전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,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 경우 「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」에 대하여는 중간생략등기를 가능토록 함에 따라 중간생략등기 대상자를 조례로 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개정법률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생략등기 대상자인 「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」를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2조)
 - 부천중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포도마을 뉴-서울아파트 건설업자 (주)뉴-서울주택건설
- 한시법으로서 이 조례의 효력기간 명시 → 1999년 12월31일까지(안 부칙 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특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(주)뉴-서울주택건설의 부도가 발생하여 건설업체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.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내에 (주)뉴-서울주택건설업체와 유사한 곳이 또 있는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없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

의안번호	제172호
의결년월일	99. 7. 8 (제71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6. 2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경제사정의 악화와 더불어 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야기되는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음.
- 99. 3. 31일자로 공포된 개정법률에 의하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이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 시행자와 부동산소유권 이전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,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 경우 「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」에 대하여는 중간생략 등기를 가능토록 함에 따라 중간생략등기 대상자를 조례로 정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- 개정법률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생략등기 대상자인 「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」를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2조)
 - 부천중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포도마을 뉴-서울아파트 건설업자 (주)뉴-서울주택건설
- 한시법으로서 이 조례의 효력기간 명시 → 99. 12. 31일까지(안 부칙 제2항)

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”를 규정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) 법 제2조제4항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”라 함은 파산,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
1. 부천시중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포도마을 뉴-서울아파트 건설업자 (주)뉴-서울주택건설

제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효력기간) 이 조례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